

보도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11. 2. 1(화) 14:00		
배포일시	2010. 2. 1(화) 11:00	담당부서	세제실 조세정책과
담당과장	임재현 과장	담당자	최영전 서기관(2150-4111)

'10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

- 기획재정부는 '10.12월말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
- (개정대상 시행규칙) 소득세법 시행규칙, 법인세법 시행규칙,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등 총 14개 세법 시행규칙*
 - * 국세기본법, 국세징수법, 조세특례제한법, 소득세법, 법인세법, 과세자료제출법, 부가가치세법, 개별소비세법, 교통에너지환경세법, 주세법, 증권거래세법,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, 농림특례규정, 외국인관광객특례규정 시행규칙
- (개정내용)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, 서식 개정 사항, 기타 제도개선을 위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
- (향후 추진일정) 입법예고,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2월말까지 공포할 예정

※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(국번호 : 2150-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①법인규칙(법인세제과: 4171), ②소득규칙(재산세제과: 4211), ③부가규칙·조특규칙·농림특례규칙(부가가치세제과: 4231) ④국조규칙(국제조세제도과: 4331) ⑤기본규칙(조세정책과: 4117)

< 별첨 > 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

법인세법 시행규칙

①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관련 세부 규정(법인규칙 §13)

< 법령 개정내용 >

◇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(법인세법 §23조②, 법인세법시행령 §26의2)

○ K-IFRS 도입 기업에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

- 대상 자산 : 유형고정자산,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

- 감가상각한도 : K-IFRS 도입 직전 3년간 평균상각률을 적용한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하되,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합계가 K-IFRS 도입 이전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

* (K-IFRS 도입전 정액법을 사용한 경우) 취득가액 × 평균상각률
(K-IFRS 도입전 정률법을 사용한 경우) 미상각잔액 × 평균상각률

○ (개 정) 법령에서 위임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관련 세부규정

-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요건 :

- ① 법령·계약에 의한 권리로서 사용기간이 무한하거나 갱신 가능한 것*
- ② K-IFRS에 의해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으로 분류
- ③ 결산상 감가상각비 미인식

* (예시- 상표권) 상표법에 의한 권리로서 유효기간이 10년이며 갱신 가능

- K-IFRS 도입 이전 정액법·정률법을 모두 사용한 경우 신고조정 한도 계산 :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2가지 방법* 중 선택 허용

- * ① 정액법 평균상각률·정률법 평균상각률을 가중평균하여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
② 비중이 큰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으로 통일하는 방법

② 축사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축소(법인규칙 별표7)

- (현 행) 철골·콘크리트 건물 40년, 기타 건물 20년 기준내용연수 적용
 - 다만, 발전소, 공장, 폐기물 처리장 등 노후화가 빠른 건물은 일반건물 기준내용연수의 50% 적용(20년, 10년)
- (개 정) 일반건물 기준내용연수의 50%가 적용되는 건물의 범위에 축사 추가

* 한·EU FTA 체결에 따른 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목적

③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개정

- 1단계(금년) : 표준산업분류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준내용연수 표 개정(업종별 기준내용연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)
- 2단계('12년 이후) : '14년 감가상각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도입*에 대비하여 기준내용연수표 전면 개정
 - 현행 기준내용연수표는 '95년 개정된 것으로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그동안의 전 업종의 실제 자산 life-cycle 변화를 반영

* '13년까지는 K-IFRS 도입 이전 감가상각비까지 추가 손금산입이 허용되므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'14년부터 K-IFRS 도입 효과 발생

④ 감가상각방법 변경 사유가 되는 회계정책의 범위(법인규칙§14)

< 법령 개정내용 >

◇ 감가상각방법 변경 사유 추가(법인세법시행령 §27)

-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

○ (개 정) 감가상각방법 변경 사유가 되는 회계정책의 변경

- K-IFRS 도입에 따라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

- 지배기업*이 K-IFRS를 도입하여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
종속기업*이 지배기업과의 회계정책 일치를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
동일하게 변경한 경우

* 지배기업 · 종속기업 정의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름

5] 법정기부금단체 세무요건 규정(법인규칙§14)

< 법령 개정내용 >

- ◇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이 총 수입금액의 1/3 이상이어야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(법인세법시행령 §36의2④)
- ◇ 전문모금기관은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80%이상이고, 기부금 모집·배분 및 기관 관리·운영비가 기부금수입의 10% 이하여야 법정기부금 단체에 해당(법인세법시행령 §36의2③5)

○ (신 설) 법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판정시 필요한 총 수입금액, 총 지출금액, 정부지원금, 배분지출액 등의 범위를 정함

- 총 수입금액* 및 총 지출금액은 손익계산서상 해당금액으로 하
되 현재·미래 현금흐름과 무관한 항목** 은 제외하고 계산

* 단, 법인세법시행령 §2①에 따른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제외

** (예시) 대손충당금,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액 및 환입액 등

- 정부지원금은 국가·지자체로부터 이전수입(보조금 등) 및 법령상
강제 규정에 따른 민간으로부터 이전수입(부담금 등)을 합하여 계산

※ 총수입금액, 총지출금액, 정부지원금 및 배분지출액 범위는 「공공기관 운영법」
에서 정한 범위와 유사

⑥ **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외 대상 보완**(법인규칙 §44)

- (현 행) **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**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저가로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서 제외
- (개 정) **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**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로 변경
 - **자회사가 소속근로자에게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모회사의 주식** 취득자금을 대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

소득세법 시행규칙

① **장기할부조건 자산 양도시 '양도대금'의 의미 명확화**(소득규칙 §78③)

- (현 행) 장기할부조건 요건 중 양도대금은 '계약금을 제외한 양도대금'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해석
- (개 정) 법령해석으로 운용중인 양도대금의 의미를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규성을 강화

② **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범위 보완**(소득규칙 §79①3호)

- (현 행) 양도소득 계산시 자기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소요되는 시설비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
- (개 정) 자기 토지와 인접한 타인 토지에 신설한 도로 시설비도 자기 토지 양도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필요경비 현실화
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
①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확대(부가규칙 §25의2)

- (현 행) 소매업, 운수업, 개인서비스업 등은 재화 및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
- (개 정)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자동차 제조업 및 판매업을 추가하여 납세편의 지원
 - * 자동차 제조업 및 판매업은 사실상 소매업과 같은 소비자 상대업종으로 전자세금계산서('11.1.1시행) 발급실익은 적으면서 납세협력부담이 크게 발생하여 이를 완화

②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 이자율 조정(부가규칙 §15)

- (현 행)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* 계산시 4.3%의 이자율을 적용
 - * 간주임대료 : 부동산임대보증금 × 과세기간의 일수 × 이자율 / 365일
- (개 정)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조정(4.3% → 3.7%)
 - ※ 소득세법,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정(소득규칙 §23①, 법인규칙 §6)

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운영사업자 등록요건 신설 등(부가규칙 §16의2)

- (현 행)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운영사업자의 등록요건이 추상적으로만 규정(시스템의 안정성·신뢰성 등)되어 있고, 등록신청일 부터 7일이내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운영사업자 결정·통지
- (개 정) 등록요건을 신설*하고 결정·통지기간 연장(7일→14일)
 - * 자본금 규모, 자료상 행위로 조세법 처벌 여부, 국세 체납 및 미납국세 결손처분 여부 등
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□ 정부업무대행단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 추가(조특규칙 별표10)

- (개 정) 한국원자력기술원, 영화진흥위원회, 한국콘텐츠진흥원, 한국광해관리공단, 한국전파진흥원이 제공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제사업에 추가

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

①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추가(농림특례규칙 별표 2)

- (현 행) 경운기, 농업용 트랙터 등 37개 기종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
- (개 정)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농업용 로더(2톤 미만), 동력제초기를 추가하여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

② 중고 농업용 난방기 면세 경유 공급 중단(농림특례규칙 별표 2)

- (현 행)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'10.1.1 이후 공장출고되는 신규 농업용 난방기에 대하여는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 (다만, 면세 등유 및 중유 등을 계속 공급)
- (개 정) '11.7.1 이후 구입하는 중고 농업용 난방기*에 대하여도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

* '10.1.1 출고된 신규 난방기를 구입하지 않고 중고 난방기를 구입하여 면세 경유를 부정유통하는 사례 방지목적

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

① 비교가능성 분석요소 구체화(국조규칙 §1-2 신설)

< 법령 개정내용 >

◇ (시행령) 비교가능성 분석요소(§5②)

- (당초) ①사업활동의 기능, ②계약조건, ③거래에 수반되는 위험, ④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, ⑤시장여건의 변화, ⑥경제여건

→ ⑤시장여건의 변화와 ⑥경제여건은 '경제여건'으로 통합하고,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로서 '사용되는 자산', '사업전략' 추가

→ 분석요소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

- (개 정) OECD 등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실무관행을 반영하여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(신설)

*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는 최적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합리적으로 차이조정을 하기 위한 핵심사항임

-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: 유형재화의 거래, 용역제공, 무형재화의 거래 등 거래유형별 비교요소 상세화
- 사업활동의 기능 : 설계, 제조, 조립, 연구개발, 용역 등 수행기능
-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: 가격변동, 투자손실, 재무위험, 신용위험 등
- 사용되는 자산 : 자산유형과 자산특성 등에 대한 분석
- 계약조건 : 거래에 수반된 보증책임, 위험, 기대편익 등
- 경제여건 : 시장여건 및 순환변동의 특성
- 사업전략 :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, 시장점유율 확대전략 등

② 특수관계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과의 적합성 요소 구체화
(국조규칙 §1-3 신설)

< 법령 개정내용 >

◇ (시행령)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기준 추가(§5①, ③)

- (당초) ①비교가능성, ②자료 확보·이용가능성, ③가정의 현실 부합성, ④자료·가정의 결함이 미치는 영향

→ ⑤특수관계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 추가(§5①)

→ 적합성 평가 기준 예시 및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(§5③)

- (개 정) OECD 논의 동향 및 실무관행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적합성 판단요소를 시행규칙에 반영(신설)

*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정상가격 측정 방식과 분석대상과의 적합성이 높아야 함

-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재화나 용역의 동질성을 우선 고려
- 재판매가격방법은 유통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
- 원가가산방법은 중간재, 공동설비계약, 용역거래 등에 유용
- 이익분할방법은 특수관계거래 한쪽 당사자만을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유용
- 거래순이익률 지표 선정은 특수관계거래와의 관련성 및 영업 활동과의 상관관계를 고려
- * 거래순이익의 매출·자산·매출원가 및 영업비용 등에 대한 비율 및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적용시 고려요소 구체화 등

③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구체화(국조규칙 §1-4 신설)

< 법령 개정내용 >

◇ (시행령)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신설(§6①)

○ (당초) 분석절차 규정 없음(실무상 통상적인 절차는 있음)

→ 분석절차 예시 및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(§6①)

○ (개 정) OECD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분석절차를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분석절차 단계별 실질적 분석내용 규정(신설)

*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실무상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음

- 분석대상 연도의 선정
- 국제거래와 관련된 납세자 사업환경 분석
- 국내·외 분석대상 당사자 선정,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, 국내외 특수관계거래 당사자의 기능, 자산, 위험 등 검토
- 내부 비교가능거래 검토
- 외부 비교가능거래 자료의 경우 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가
- 최적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거래순이익률 지표 선정
- 비교가능성 분석을 기반으로 잠재적 비교가능대상의 선정
- 특수관계거래와 독립된 거래간의 가격·이윤 등에 실질적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조정
-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정상가격 결정

4] 거래의 통합분석 적용례 구체화(국조규칙 §1-5 신설)

< 법령 개정내용 >

◇ (시행령) 거래의 통합분석 규정 신설(§6⑧)

○ (당초) 관련 규정 없음(실무상 적용되는 내용)

→ 개별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나 연속되어 있어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이를 허용(§6⑧)

○ (개 정) 국제거래 다양화·복잡화에 따라 관련 거래를 통합하여 정상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음(신설)

- 동일한 제품라인과 연계되어 거래되는 제품군
- 제조 노하우 제공과 핵심 부품 공급의 결합
-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우회거래
- 프린터와 잉크 등 묶음판매전략에 따른 거래

5] 다년도 자료분석 적용례 구체화(국조규칙 §1-6 신설)

< 법령 개정내용 >

◇ (시행령) 다년도 자료분석 규정 신설(§6⑨)

○ (당초) 관련 규정 없음(실무상 적용되는 내용)

→ 과거 사업연도의 영향이 여러 연도에 걸쳐 발생하는 등 여러 사업 연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이를 허용(§6⑨)

○ (개 정) 특정 연도 자료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다년도 자료의 사용을 허용(신설)

- 시장침투전략, 제품 주기를 고려한 판매전략
- 경기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효과

⑥ **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비적용 요건으로서 '같은 지역 등' 대상 확대**(국조규칙 §10-3)

○ **(현 행)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비적용 요건**

- **해외지주회사인 경우: 특정외국법인과 '같은 지역 등'에 자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**(국조령 §36-3)

* 특정지역 진출시 사업전략 등의 이유로 동일지역에 지주회사 및 자회사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 조세회피의도가 적다고 보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

- **도매업인 경우: 특정외국법인이 '같은 지역 등'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매출액의 50%를 초과할 것**(국조령 §36-2)

- **같은 지역이란 유럽연합(EU)을 말함**(국조규칙 §10-3)

○ **(개 정) 같은 지역의 범위에 '중국과 홍콩' 추가**

- **홍콩을 통한 중국 진출 등 투자현실을 반영하여 같은 지역의 범위를 추가 지정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**

* 국내기업의 중국진출시 홍콩을 경유, 지주회사·자회사 형태로 진출 추진
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
□ **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**(기본규칙 §13의2)

○ **(현 행)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**(연 4.3%)

○ **(개 정) 납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,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조정**(연 4.3% → 3.7%)